

발간등록번호
11-1721000-000494-10

수탁 / 2022-03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3. 2. 28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개발기간 : 2022.1.1. ~ 2022.12.3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2. 28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구명희
참여연구자: 황명구
참여연구자: 이경재
참여연구자: 김현홍
참여연구자: 최대승
참여연구자: 강아현
참여연구자: 서준희
참여연구자: 이지은
참여연구자: 이민정
참여연구자: 이지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 요약 문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총괄연구개발 식별 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정책결정/집행)	50%	SB1199 (공공정책)	30%	SB9999 (정치/행정)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2. 1. 1.~ 2022. 12. 31.											
총 연구개발비	총 300,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000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전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약 63개 기관 대상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제도개선 사항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합리적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개선 방안 마련 									
연구개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63개 기관) ○ 합리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발굴 등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고시자료로 활용 ○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해당 사항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등 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신제품		
			1					생명 정보	생물 자원		화학물	정보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타	
	논문 게재	학술 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안건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 상 ·수상
			1	1		2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영문핵심어 (5개 이내)	non-profit corporation		Indirect-cost ratio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합리적인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발굴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교수, 공인회계사, 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적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간접비비율(안)에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합리적인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발굴
 - 원가동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고, 10여차례 회의를 통해 원가동인을 발굴함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 (산출기준 마련)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연) 및 기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63개 기관) 및 고시
 - (원가동인 발굴) 대학 전체 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개선(청소용역비·보안용역비·시설팀인건비·건축물관리비에 새로운 원가동일을 발굴), 단과대학 연구지원인건비 인정기준을 개선함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최종보고서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22	최종보고서	2023.2.28.	11-1721000-000494-10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1	고시	개정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2022.12.2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안건 상정

번호	상정위원회	안건명	상정일자	안건내용
1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022.4.29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심의·의결
2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2022.11.22	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연)·기타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안) 찬성 여부를 심의·의결

□ 제도 개선

번호	제도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추진일자	개선내용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정책)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홍보효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기타 성과]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2) 목표 달성 수준

추진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4.25)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하여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심의·의결(11.22)하였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고시(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의결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하여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심의·의결(11.22)을 하였고, 심의·의결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합리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동인 발굴을 위하여 3~9월까지 1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학 전체 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개선(청소용역비·보안용역비·시설팀인건비·건축물 관리비에 새로운 원가동일을 발굴), 단과대학 연구지원인건비 인정기준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자체 보완활동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모든 기관에 동일한 합리적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 각 기관별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기관별 적정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 하나의 원가동인 적용을 통해 공통부문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원가동인 발굴을 통해 좀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원가동인 발굴결과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활용할 계획임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요약문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에 대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필요
 -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간접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II. 연구내용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 교수, 공인회계사, 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 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적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안)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고시

□ 합리적인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발굴

- 대학 전체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한 별도의 원가동인 적용 등

Ⅲ. 연구결과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분야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 결정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사항
 -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가·감률 적용	<table border="1">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E</td> </tr> <tr> <td>+2%p</td> <td>+1%p</td> <td>0%p</td> <td>-1%p</td> <td>-2%p</td> </tr> </table>	S	A	B	C	D-E	+2%p	+1%p	0%p	-1%p	-2%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연구 사업 수익 규모</th> <th colspan="6">평가결과</th> </tr> <tr> <th>S등급 95점 이상</th> <th>A등급 90~94점</th> <th>B등급 85~89점</th> <th>C등급 80~84점</th> <th>D등급 75~79점</th> <th>E등급 70~74점</th> <th>F등급 70점 미만</th> </tr> <tr> <td>대</td> <td></td> <td></td> <td></td> <td></td> <td>-3%</td> <td>-6%</td> <td>-10%</td> </tr> <tr> <td>중</td> <td>10%</td> <td>6%</td> <td>3%</td> <td>0%</td> <td>-2%</td> <td>-4%</td> <td>-6%</td> </tr> <tr> <td>소</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2%</td> <td>-3%</td> </tr> </table>			연구 사업 수익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3%	-6%	-10%	중	10%	6%	3%	0%	-2%	-4%	-6%	소					-1%	-2%	-3%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정해서 중소기업의 간접비고시비율 감률 완화
		S	A	B	C	D-E																																															
		+2%p	+1%p	0%p	-1%p	-2%p																																															
		연구 사업 수익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3%	-6%	-10%																																														
중	10%	6%	3%	0%	-2%	-4%	-6%																																														
소					-1%	-2%	-3%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기관에 대한 감률 적용

구분	결정사항	비고								
감률 적용	<table border="1"> <tr> <th>산출불가 횟수</th> <th>세부 적용기준</th> </tr> <tr> <td>1회</td> <td>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td> </tr> <tr> <td>연속 2회</td> <td>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td> </tr> <tr> <td>연속 3회</td> <td>5% 적용</td> </tr> </table>	산출불가 횟수	세부 적용기준	1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2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3회	5% 적용	산출자료 미제출 및 하위 자료 제출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소위원회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불가로 판단한 경우
	산출불가 횟수	세부 적용기준								
	1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2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3회	5%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준	'20년 대학+출연연 등 평가	반영 ⇒ 대학+출연연 등 간접비	'22년 개편(안) 출연연 등 평가+간접비	'23년 대학 평가+간접비	'24년 출연연 등 평가+간접비	'25년 대학 평가+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 마다 간접비 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시기 변경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주기의 변경에 따라 '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한하여 별도의 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및 기준 적용

현행 규정	'22년도 적용 방식
2개 회계연도 산술평균	<p>❶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은 다음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개 회계연도(2021) ② 2개 회계연도(2020+2021) 산술평균 <p>❷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한 기관은 2개 회계연도 실사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개 회계연도(2020+2021) 산술평균

○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하는 사항

- 간접비 고시비율 원가산출 의무화 기관의 분류 기준을 재조정하여 차기 간접비계상 기준산출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 예정
 - '20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연간 연구비 규모가 30억 이상인 기관을 원가산출 의무기관으로 규정할 것을 의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만, 국가 R&D 규모가 급증하여 30억 기준 적용 시 소위원회의 고시비율 산출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바, 30억 기준의 변경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3~2024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비영리(연)·전문생산기술(연) 등 63개 대상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분야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을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산출 대상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및 기관별 관계자 대면 검토 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실적 간접비 비율(안) 도출
-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정부출연(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현황(총괄)

구분	의무기관					임의기관	계
	출연(연)	출연(연) 부설	특정(연)	특정(연) 부설	전문(연)	기타 비영리(연)	
산출기관 수	22	6	11	4	13	7	63

※ 임의기관은 신청을 받아 원가 산출

* 산출대상기관(71개) 중 8개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산출 신청서 미제출, 인력양성·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만 구성 또는 2021년 회계연도의 간접비가 연구개발출연금 한도 내에서 집행되어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산출대상에서 제외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종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4.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ICT연구원	21.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안)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에 고시('22.12.21)

□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대학 전체 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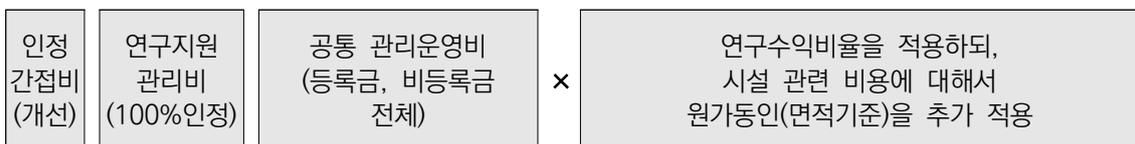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범위 확대 및 연구수익비율 개선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비등록금 회계 등의 원가 추가 인정(전체 원가 반영)

연구수익

• 연구수익비율 = $\frac{\text{등록금회계 수익} + \text{비등록금 회계 등 수익} + \text{산학협력단 기타수익} + \text{연구수익}}{\text{교육활동수익} + \text{수입대체경비/전입금}}$

○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개선사항



◆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i) 공공요금
(산학협력단
집행분)

• 연구지원 : 현행 기준만 인정(계량기 적용)
× • 공통지원 : 공통면적비율(a) x 연구수익비율
(공통면적:기본면적+부속면적/총면적)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제2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7
제1절 추진근거	9
제2절 추진경과	9
제3절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1
제4절 가·감률 기준	12
제3장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15
제1절 산출 개요	17
1. 대상기관	17
2. 산출절차	19
3. 제출자료	20
4. 산출방법	21
5. 대면검토	22
6. 이의신청 심의	24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25

제4장 원가동인 제도개선	31
제1절 개요	33
1. 추진배경	33
2. 현황 및 문제점	34
3. 해외 간접비 제도	36
제2절 추진경과	37
1. 추진체계	37
2. 회의 진행현황	38
제3절 원가동인 개선방안	39
1. 항목별 개선사항	39
2. 시뮬레이션 결과	48
제4절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51
제5장 결 론	59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61
1. 추진배경	61
2.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방향	63
제2절 대학 간접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 내역서 분석 및 개선계획	70
1. 추진배경 및 분석대상	70
2. 분석계획	71
3. 개선계획	71
4. 기대효과	72

표 목 차

<표 2-1>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12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13

<표 2-3> 별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13

<표 2-4> 산출불가 횟수에 따른 감률 세부 적용 기준 13

<표 3-1>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18

<표 3-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23

<표 3-3>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25

<표 3-4>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27

<표 4-1> 대학 간접비 집행 추이, 2012-2020 33

<표 4-2> 연구비 상위 27개 대학의 개선영향 추정 분석 50

<표 4-3> 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61

그림 목 차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5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12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19
[그림 4-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35
[그림 4-2]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체계	37
[그림 4-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인정 항목	39
[그림 4-4]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분모 인정 항목	40
[그림 4-5] 대학 간접비 산출제도 향후 일정	51
[그림 5-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재무제표 양식	65
[그림 5-2] 회계제도 개선 로드맵(2022~2024)	67
[그림 5-3] 운영성과표 구분회계 구조도	68

제 1 장

서 론



여 백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가 필요
- 이러한 간접비 비중의 증가추세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 기타 비영리(연)등에 대한 기관별로 적절한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매 2년 마다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
-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 산출절차 등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비영리기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2023~2024년도 적용할 정부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 기타 비영리(연)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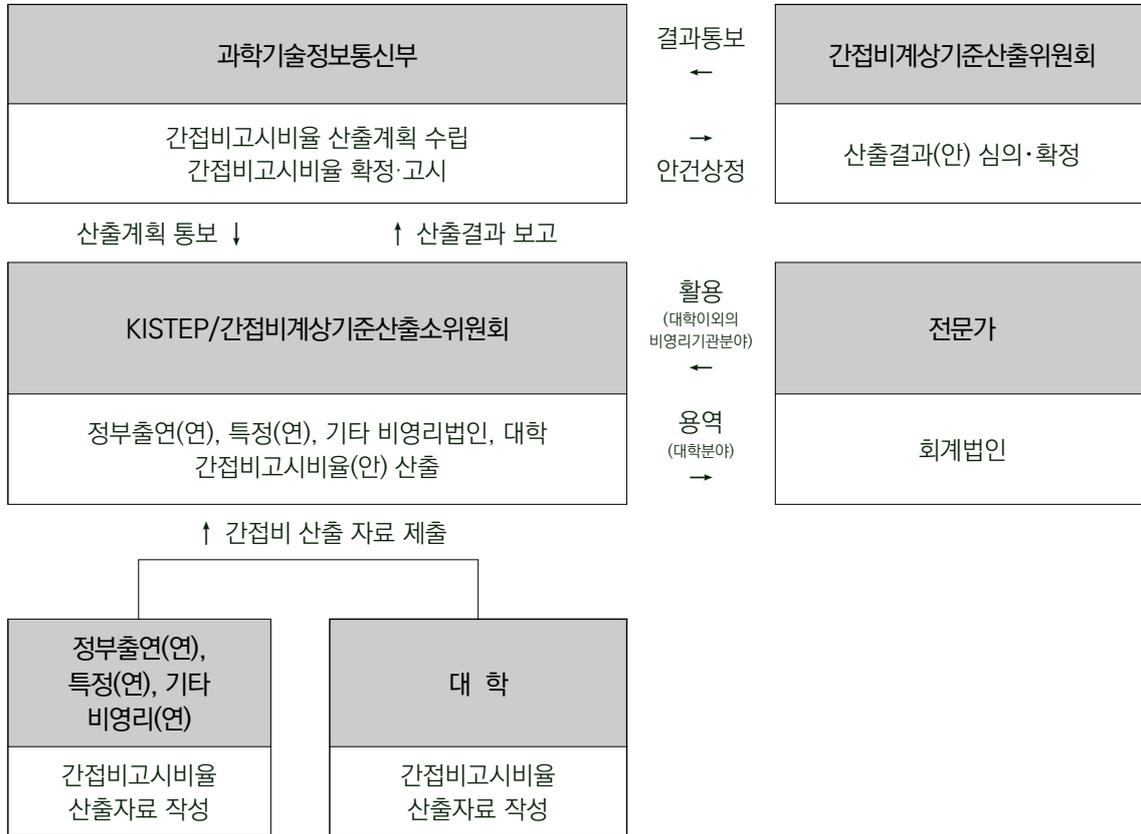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대학 및 정부 출연(연)과 특정(연) 소속 회계 및 간접비 전문가로 간접비제도 개선 작업반을 구성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정부출연(연) 등 분야는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이를 반영한 산출기준(안) 설정
- 도출된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안)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정부 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 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22. 12. 21)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체계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여 백

제 2 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여 백

제1절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

제22조(간접비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22.4.25/제1차 간접비산출위)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세부 산출기준 확정
- '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22.5.2~31)
- '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설명회('22.5.10, KAIST 창의학습관)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실시('22.5~'22.11)
 - 대상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접수('22.5.2~'22.5.31)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 회의(6.15, 6.27/2회)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분과별 실사(7.4~8) 및 검증(7.15, 9.7/2회)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0.5~11.6)
-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0.5~10.6)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제출('22.11.16)
- '22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심의('22.1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22.12.21)

제3절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 = A + B

■ A (실지출 간접비비율) =
$$\frac{\text{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text{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B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frac{\text{③ 추가소요 간접비}^{**}}{\text{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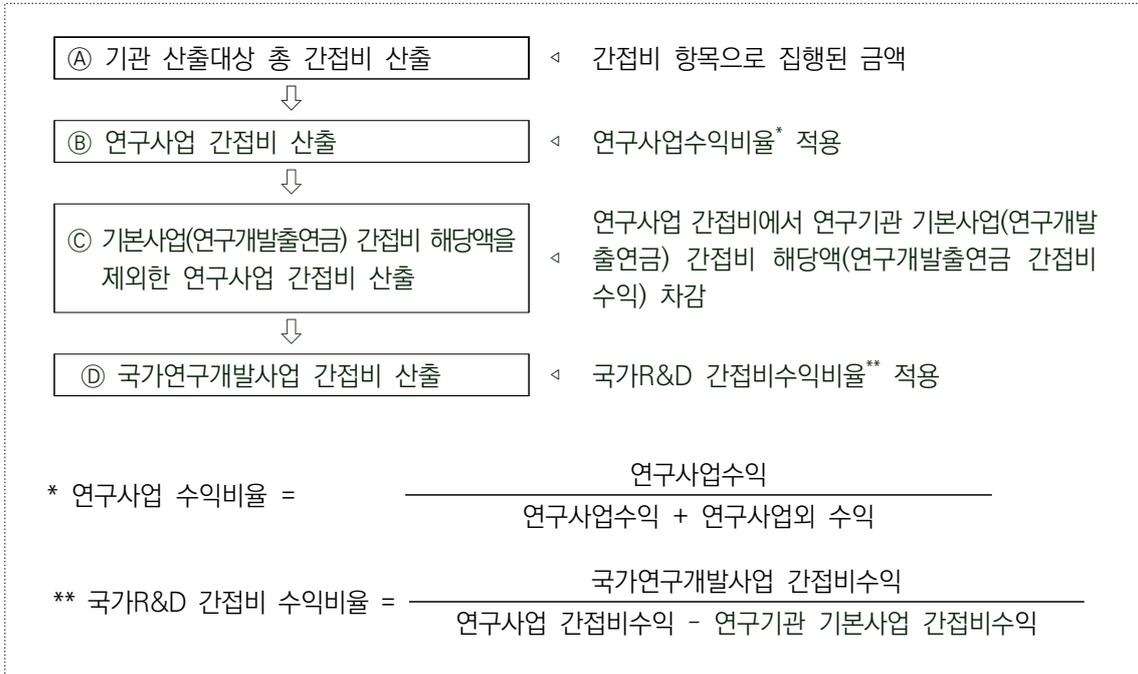
**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 산출 원칙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기관의 총 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 비율을 절차에 따라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국가 R&D 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 직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추가소요 간접비 :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비용으로 인정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제4절 가·감률 기준

- 정부출연(연)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원가 산출 후 가·감률 기준을 적용
 -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표 2-1〉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연구사업수 익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3%	-6%	-10%
중	10%	6%	3%	0%	-2%	-4%	-6%
소					-1%	-2%	-3%

※ (적용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적용

〈표 2-3〉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감률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10%이내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간접비실사비율) ± C(가·감률)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기관에 대한 감률 적용

*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산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보완자료 2회 이상 미제출 및 보완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로 판단한 경우

〈표 2-4〉 산출불가 횟수에 따른 감률 세부 적용 기준

산출불가 횟수	세부 적용기준
1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2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3회	5% 적용

※ (적용 예시)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산출불가 시(1회)에는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20%에서 20%를 삭감(20%×(100-20)=16%)하여 16%를 적용하고, 2023년도에도 산출불가 시(2회)에는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16%에서 20%를 삭감(16%×(100-20)=12.8%)하여 12.8%적용하며, 2024년도에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시(3회)에는 5%를 적용함

여 백

제 3 장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
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여 백

제1절 산출 개요

1.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R&D 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 기관은 5% 적용
 -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 (임의기관)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연구기관** 중 신청기관
 -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표 3-1>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정부출연(연)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출연(연) 부설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극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특정(연) (13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특정(연) 부설 (5개)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뇌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문생산 기술(연)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타 비영리 (연) (7개)	고등기술연구원, 삼성서울병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선급,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한국조명ICT연구원

※ 제외기관 : 의무기관 중 8개 기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신청서 미제출기관(6개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수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 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 구성된 기관 :

· 한국과학창의재단

- 2021 회계연도의 간접비가 연구개발출연금 한도 내에서 집행되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기관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

2. 산출절차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추진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3. 제출자료

- 기본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자료 등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0	2021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엑셀	필수	○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한글/ PDF	필수	○
2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엑셀	필수	○
3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PDF	필수	○
4	출연(연) 등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엑셀/ PDF	필수	○
5	출연(연)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PDF	필수	X
6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
7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
8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엑셀	예시	○
9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엑셀	필수	○
10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10-1. 기관공통지원경비	엑셀	필수	○
		10-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엑셀	필수	○
		10-3. 연구실안전관리비	엑셀	필수	○
		10-4. 연구보안관리비	엑셀	필수	○
		10-5. 연구윤리활동비	엑셀	필수	○
		10-6.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엑셀	필수	○
		10-7. 과학문화활동비	엑셀	필수	○
		10-8.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엑셀	필수	○
11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
12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엑셀	필수	○
1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엑셀	필수	○
14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문서	예시	X
15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 (간접비편성및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제출)	문서	필수	X
16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 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문서/ 엑셀	필수	X

□ 별도자료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자료
- 추가소요 및 특이 사항 증빙 등 근거자료

4. 산출방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 등을 활용하여 검토위원 구성·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 소속 위원,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서면검토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기관별 제출자료 검토 실시,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1차 서류검토 회의('22. 6. 15)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별 템플릿 제출여부 확인 기관별 수정·보완 사유 및 요청자료 정리 등(형식적 검토)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전략회의('22. 6. 27)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절차 및 방법 논의 추진일정 논의 및 확정, 분과별 산출기관 분담 확정 등

□ 대면검토

- 분과별·일정별로 연구개발기관별 대면 방법에 의해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간접비 비율 산출 관련 자료를 확인,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검토
-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 비율(안) 산출

□ 최종검토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검토 후 특이사항,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확정
 -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1차 회의('22. 7. 15)
 -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제기된 이슈 사항 논의 및 적용 기준 결정, 향후 추진계획 논의 및 결정 등
 -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차 회의('22. 9. 7)
 -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추진현황 중간점검 및 이슈사항에 대한 적용기준 결정, 향후 추진일정 논의 및 결정 등

5. 대면검토

- 일 시 : 2022. 7. 4(월) ~ 8(금) (5일간)
- 장 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 대상기관 : 총 63개 기관
 - 정부출연(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2개 기관
 - 출연(연)부설 : 극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
 - 특정(연)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
 - 특정(연)부설 :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4개 기관
 - 전문(연) : ECO융합섬유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 13개 기관
 - 기타 비영리(연) : 고등기술연구원, 삼성서울병원 등 7개 기관

제3장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검증일정

<표 3-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날짜	시간	1분과 (허대성 회계사, 오현석 팀장)	2분과 (이두영 회계사, 김진필 부장)	3분과 (박형근 회계사, 이희찬 팀장)	4분과 (안병준 회계사, 김중혁 실장)
7.4 (월)	10:00~11:30	검증을 위한 사전준비 및 사전 검토			
	11:30~13:00	점 심			
	13:00~14: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서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대전)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울산과학기술원(울산)
	14:30~15:00	추가검토 및 휴식			
	15:00~16: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	광주과학기술원(광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진천)
	16:30~18:00	한국과학창의재단(서울)	나노종합기술원(대전)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대전)
	18:00~	귀 가			
7.5 (화)	10:00~11:30	한국과학기술원(대전)	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오창)	한국자동차연구원(천안)
	11:30~13:00	점 심			
	13:00~14: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전)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건설기계부품연구원(군산)
	14:30~15:00	추가검토 및 휴식			
	15:00~16:30	고등과학원(서울)	다이텍연구원(부산)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경기)
	16:30~18:00	한국뇌연구원(대구)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경산)	ECO융합섬유연구원(익산)	한국선급(창원)
	18:00~	귀 가			
7.6 (수)	10:00~11:30	한국원자력안전재단(성남)	고등기술연구원(경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11:30~13:00	점 심			
	13:00~14:3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포항산업과학연구원(포항)	삼성서울병원(서울)	세계김치연구소(광주)
	14:30~15:00	추가검토 및 휴식			
	15:00~16:30	중소조선연구원(부산)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	녹색기술센터(서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천안)
	16:30~18: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대전)	극지연구소(인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18:00~	귀 가			
7.7 (목)	10:00~11:30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기)	한국천문연구원(대전)
	11:30~13:00	점 심			
	13:00~14:30	한국재료연구원(창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대전)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전기연구원(창원)
	14:30~15:00	추가검토 및 휴식			
	15:00~16:3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
	16:30~1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한국화학연구원(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
	18:00~	귀 가			
7.8 (목)	10:00~11: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한국조명ICT연구원
	11:30~13:00	점 심			
	13:00~14:30	한국식품연구원(완주)	추가검토	추가검토	추가검토
	14:30~15:00	최종마무리			
	산출기관수	17개 기관	16개 기관	16개 기관	16개 기관

□ 검증방법

- 분과별 위원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기관의 담당자간 산출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제출자료 타당성 미흡 시 추가 보완 자료 제출 등

6. 이의신청 심의

- 일 시 : 2022. 11. 4(금), 30분 이내

- 장 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서울역 14번 출구)

- 대상기관 : 총 1개 기관

- 녹색기술센터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사유,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기관 당 10분)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응답 등 (20분)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 총괄현황

〈표 3-3〉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년도	구분	의무기관					임의기관	계
		출연(연)	출연(연) 부설	특정(연)	특정(연) 부설	전문(연)	기타 비영리(연)*	
'21	산출기관 수	22	6	10	5	14	6	63
'22	산출기관 수	22	6	11	4	13	7	63

* 임의기관은 해당기관의 신청을 받아 원가 산출

□ 전년도 대비 간접비 증감율

○ '22년 간접비 평균 비율은 17.54로 '21년 18.96대비 1.42% 감소

구분	의무기관					임의기관	고시 평균(%)
	출연(연)	출연(연) 부설	특정(연)	특정(연) 부설	전문(연)	기타 비영리(연)	
'21년 평균 (B,%)	18.83	16.59	20.04	17.98	18.10	22.27	18.96
'22년 평균 (A,%)	16.77	16.12	19.87	14.96	16.63	21.10	17.54
증감 (B-A,%)	△2.06	△0.4	△0.17	△3.02	△1.47	△1.17	△1.42

□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2010~2022년 간접비 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13년 이후 2년마다 고시(단, 16년은 수정 고시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9	2021	2022
간접비 고시비율 평균(%)	22.32	21.02	21.54	20.08	21.04	21.13	19.03	19.33	18.96	17.5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간접비고시비율 특이기관

구분	기관명	특이사항	산출위원회 결정사항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출연(연) 부설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전문(연)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특정(연)	기초과학연구원	수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 인력양성 · 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 구성	간접비 원가산출의 실익이 없는 기관으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주하여 17%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		
특정(연)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1 회계연도의 간접비가 연구개발출연금 한도 내에서 집행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5% 적용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현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표 3-4>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종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4.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ICT연구원	21.55

여 백

제 4 장

원가동인 제도개선



여 백

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 지속적인 국가 R&D 연구비 규모 증가 및 간접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접비가 연구지원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 존재
 - 특히 대학 연구수익에서 국가 R&D 비중이 높은점(약 75%)과 간접비 고시비율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정확한 원가비율 산출이 필요
 - ※ '19년 기준 대학의 총 연구비 중 간접비 비중은 14.3%로 출연(연) 7.1% 및 영리기관 약 4%에 비해 높은 편으로서 합리적 원가산출 필요

〈표 4-1〉 대학 간접비 집행 추이, 2012-2020

(단위: 억원,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 R&D 총 연구비	134,338	146,367	154,205	160,719	162,031	163,973	167,712	174,484	198,657	
대학 총 연구비(a)	32,177	34,505	35,242	36,474	37,001	37,919	39,380	44,163	50,153	
간접비	대학 간접비 (b)=b/a	4,372 (13.6)	4,728 (13.7)	4,837 (13.7)	5,158 (14.1)	5,149 (13.9)	5,443 (14.4)	5,680 (14.4)	6,333 (14.3)	7,061 (14.1)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18.23%	18.18%	좌동	25.89%	26.14%	24.31%	좌동	24.73%	좌동

출처: '12~'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인문 및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사업 대상, 정부연구비 및 대응자금 중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물건비는 제외)

- 한편 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사용용도 및 간접비 지원규모가 연구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
 -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 등 자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여 양자를 충족하는 제도개선 마련 필요
 - 합리적 원가산출 방안을 도입하여 국가는 대학의 연구개발 지속성 유지를 지원하고, 대학은 연구지원 및 간접비 투명성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 간접비원가 산출 시 대학의 일부 수익과 원가는 미반영

○ 국립대학의 수입대체경비전입금 및 사립대학의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익과 원가 대부분이 간접비 산출 시에는 미반영됨

–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비등록금회계 등의 수익이 미반영됨에 따라 대학 전체의 공통원가 배분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기에는 한계 노출

※ 한편 비등록금회계 등의 일부 원가(인건비)는 간접비로 인정함에 따라 수익·원가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함

$$* \text{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연구수익} + \text{교육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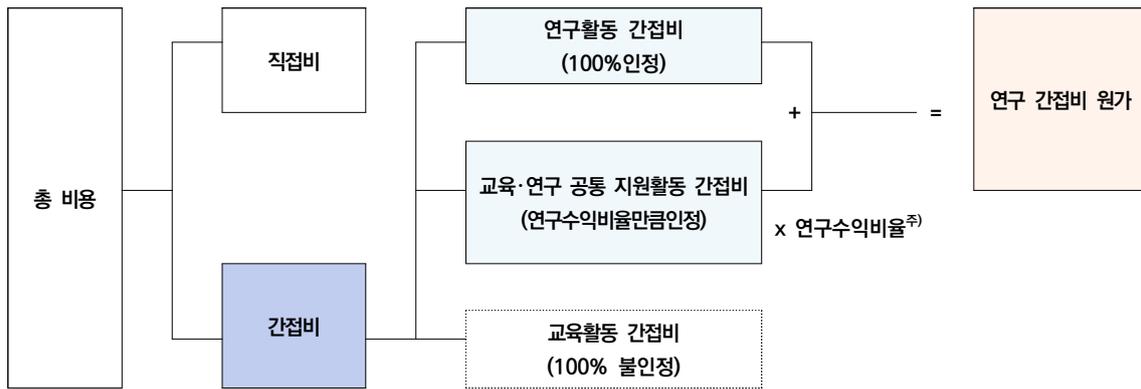
– 간접비원가 산정 시 비등록금회계 등의 관리운영비는 미반영하나, 비등록금회계 등에서 재정 확보가 많은 일부 대학은 모든 원가를 간접비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

□ 대학의 전체 원가를 반영하더라도 현재 적용하는 대학의 원가 배분기준(원가동인)*이 너무 단순하여 적정 원가 산출에 불충분

* 원가를 유발하는 요인(cost driver)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으로 사용

○ 교육·연구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간접비는 연구수익비율이라는 단일 배분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실사용 연구활동 간접비 산출에 애로**

** 공통 지원활동의 비용과 부문별(교육, 연구 등) 수익간의 인과관계가 적을 경우, 연구수익비율에 의한 간접비 배분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비목별 특성에 맞는 원가동인 발굴을 위한 회계자료 등이 부재하여 현재 단일기준 사용 중



[그림 4-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주)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수익비율의 한계점 등으로 인하여 공통지원부문 간접비로 인한 간접비비율의 왜곡 발생 우려
 -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간접비비율 중에서 공통지원부문(행정관리+시설관리) 관리운영비로 인하여 산출된 간접비비율이 10%p를 초과하는 대학이 59개(전체 158개)임
- 간접비 산출에 반영되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인정 범위가 실제 대학 현장의 업무분장 및 업무형태와 차이 존재
 - 단과대학 행정실 인력은 거의 대부분 교무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과대학이 일정 연구수익 조건(연간 5건/3억)을 충족할 경우 행정실 인력 전체를 공통지원 인건비로 인정
 - ※ ①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연구비 중앙관리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지원 행정업무가 산학협력단에서 처리됨에 따라 단과대학 행정실의 연구지원 활동은 매우 미미한 점(교수 등 연구자가 산단에 자료를 직접 제출함) ② 연구근접지원인력 등을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점 ③ 학교 홈페이지상 업무내용이나 업무분장 자료에 나타난 단과대학 행정실의 연구지원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력은 대학 연구지원체계에서 포괄적인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연구실적이 대학원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공통지원 인건비로 미인정됨
 -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기준으로 연구실적이 집계됨

3. 해외 간접비 제도

□ 영국의 간접비 제도 : 실사용 간접비 보전

- (대학 원가계산) 총수익과 총원가를 대학 내 부서별, 그리고 교육·연구·기타·지원 활동별로 구분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
 - 원가 배분 시, 교수 및 직원별 연구지원 활동 시간·공간 면적·기술자 수 등 다양한 원가동인을 활용하여 교육·연구·기타비용으로 배분
 -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 대학 회계시스템에 기반하여 활동별 실사용 비용을 포함한 회계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검토 및 제출
 - 원가 총액을 연구자의 시간 당 금액으로 나누어 연구자의 시간(FTE)*당 간접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관 간접비 배부에 활용
- * FTE(Full Time Equivalent, 전일제 환산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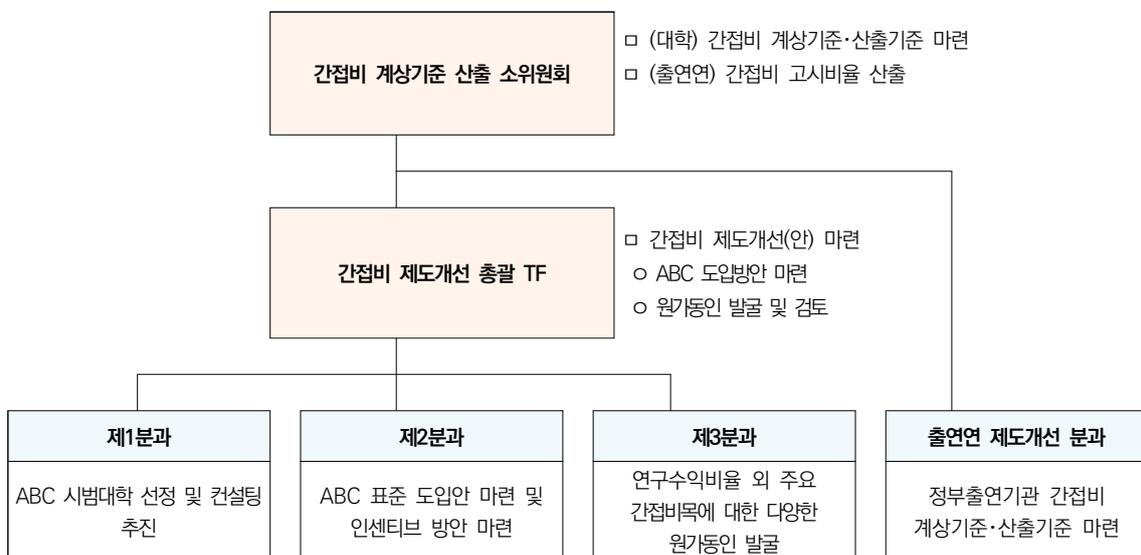
□ 미국의 간접비 제도 : 실사용 간접비 보전

- (대학 원가계산) 총수익과 총원가를 교육·후원연구·기타후원·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간접비율 산정
- (간접비율) OMB Circular A-21에 부합하는 간접비 사용액을 실사 후, 수정 총 직접비*의 비율**로 산정 후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 * 직접비 항목 중 US\$ 25,000을 초과하는 위탁연구비, 일정 금액 이상의 기자재 구입비, 자본적 지출, 의료비 지출, 수업료 면제, 임차료, 장학금, 연구 보조비 등을 제외한 금액
 - ** 간접비 비율 = 간접비 인정액(시설비용+행정관리운영비) / 수정 총 직접비
 - *** 행정관리운영비는 수정 총 직접비의 26%로 제한
- 우리나라 대학의 간접비 비율은 영미와 동일하게 실사용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적용('14년 정률방식에서 변경)하고 있으므로, 영미 방식의 장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추진경과

1. 추진체계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 도출된 개선(안)은 외부의견 수렴절차 및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위원회(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예정
 - TF는 ①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소위원회 위원장 등 2~3명의 위원과 ②회계사 2~3인, ③ABC* 도입을 위한 회계분석 시범대학의 회계팀장 및 연구지원인력 5~6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 * ABC(Activity-based costing system, 활동기준원가계산)
 - 각 분과는 총괄 TF 내 인력 위주로 구성하되 필요시 1~2인의 외부 인력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
 - 총괄 TF는 각 분과가 도출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초안을 작성한 후 소위원회가 검토
 -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제도개선(안) 및 계상기준·산출기준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 내 3~4인으로 구성된 별도 분과를 구성·운영



[그림 4-2]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체계

2. 회의 진행현황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 도출된 개선(안)은 외부의견 수렴절차 및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위원회(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예정
- 원가동인 발굴 등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10 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수행
 - 2022. 3. 15 : 간접비 제도 개선 논의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원가동인
 - 2022. 3. 22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1차)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합리적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개선 발표 및 논의
 - 2022. 4. 13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2차)
 -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간접비 비율 시뮬레이션 기준 및 방향 설정
 - 시뮬레이션 실시 및 변화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방향 설정 등
 - 2022. 4. 19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3차)
 -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간접비 비율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 2022. 5. 12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4차)
 - ○○대 및 ○○○대 시뮬레이션 사례 발표
 - 2022. 5. 20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5차)
 - 원가동인 개선방안 재검토 및 결정
 - 2022. 5. 25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6차)
 - 원가동인 개선방안에 따른 충북대 및 포항공대 시뮬레이션 사례 발표
 - 2022. 5. 27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7차)
 - 시뮬레이션 사례를 고려하여 원가동인 개선방안 재검토
 - 2022. 6. 22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8차)
 - 연구비 상위 27개 대학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
 - 2022. 7. 15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9차)
 - 간접비 원가동인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 2022. 9. 7 : 원가동인 개선 전문가 회의(10차)
 - 합리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동인 개선(안) 최종검토

제3절 원가동인 개선방안

1. 항목별 개선사항

- 대학 전체 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정 시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
 - (국립)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에서 발생한 원가 추가
 - (사립) 비등록금 회계의 관리운영비 추가

◆ 비등록금회계 등에서 재정 확보가 많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간접비 산출 시 학교회계의 반영 범위 확대가 요구되어왔음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상시 현행 인정범위인 등록금회계에 추가하여 비등록금회계를 포함하여 계상할 필요

◆ 이러한 대학 측 요구사항 및 간접비원가가 대학 현장의 실제 연구지원 현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 관리운영비의 인정 범위를 대학 전체의 원가 수준으로 확대

- 비등록금회계 등의 원가도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통지원부문의 관리운영비 산정 시 비등록금회계 등도 포함 필요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 공통적으로 연구지원 공통비목이 발생하므로 통합관점에서 관리운영비 산출 필요

구분	현행		개선안
국립대학	• 학사활동사업비(*)	⇒	• 학사활동사업비(*) •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원가(추가) * 단, 발전기금 회계는 미반영
사립대학	• 등록금 회계 원가		• 등록금 회계 원가 • 비등록금 회계 원가(추가) * 단, 법인 회계, 병원 회계는 미반영

[그림 4-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인정 항목

(*) 재정운영표 결산금액에서 수입대체경비 및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수익 인정 범위를 확대

◆ 공통 관리운영비의 범위를 대학 전체의 원가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수익비율도 대학의 모든 재원을 구성하는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수익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비등록금회계 등의 수익을 추가 반영하고, 분자는 연구수익으로 유지하여 연구활동 비중 반영
- 산학협력단의 재원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반영되었던 산학협력단회계의 기타수익도 분모에 추가

- (국립)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수익을 산출식의 분모에 포함
 - ※ 실무상 자체수익과 내부거래 및 기타총액의 합계금액을 적용
- (사립) 비등록금 회계의 수익을 산출식의 분모에 포함
- (공통) 산학협력단 회계의 기타산학협력수익 및 기타지원금수익을 산출식의 분모에 포함

구분		현행(분모)	개선안(분모)
대학 회계	국립대학	• 교육활동수익	• 교육활동수익 •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수익(추가) * 단, 발전기금 회계는 미반영
	사립대학	• 등록금 회계 수익	• 등록금 회계 수익 • 비등록금 회계 수익(추가) * 단, 법인 회계, 병원 회계는 미반영
산학협력단 회계		• 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추가) • 기타지원금수익(추가)

[그림 4-4]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분모 인정 항목

* 교내·외 장학금과 입시관리비 관련 수익은 간접비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업목적에 위해 직접 사용되므로 해당 사업비를 수익에서 차감함

□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한 별도의 원가동인 적용

- ◆ 그 동안 대학 측에서는 간접비고시비율 공공요금 인정을 위한 산출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함
 -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건물별 계량이 어려워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기준 마련 또는 기준 완화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전국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관리자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건의사항)
- ◆ 이러한 대학 측 요구사항 및 과거 적용하던 연구수익비율의 단순·획일성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하여 활동기준원가회계(ABC)에서 착안한 원가동인을 발굴하여 적용
 - 교육부의 대학 정보공시 기준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면적정보)를 별도의 원가동인으로 활용하여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한 간접비를 정교하게 산출
 - 교사시설 정보 중 ① 연구시설은 연구지원부문 관련 면적으로 적용하고, ②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은 공통지원부문 관련 면적으로 적용
 - 시설 관련 비용은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보안용역비,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로 한정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비용 중 산단 집행분)

- (연구지원) 기존 간접비 작성지침에 따라 개별 건물별로 계량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분기별로 청구한 금액만 연구지원으로 인정
 - ※ 공공요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 금액만 연구지원으로 인정 가능
- (공통지원) 기존의 단순 연구수익비율 대신 별도의 원가동인으로서 ①공통면적비율 (a)[(기본시설면적+부속시설면적)/총면적]을 선적용하고, ②산출금액에 대학 전체 수준의 연구수익비율을 적용하여 공통지원부문 적용금액을 산정

◆ 「대학정보공시」 상 면적기준

- ※ 기본시설면적 :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면적
- ※ 지원시설면적 :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면적
- ※ 연구시설면적 :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면적
- ※ 부속시설면적 :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등의 면적
- ※ 총면적 :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기본시설면적, 지원시설면적, 연구시설면적, 부속시설면적, 기타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 청소용역비, 보안용역비

- (연구지원) 별도의 원가동인으로 연구면적비율(연구시설면적/총면적)을 적용하여 연구지원금액을 직접 산정
 - ※ 연구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산단 집행분)과 동일하게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금액만 연구지원으로 인정
- (공통지원) 기존의 단순 연구수익비율 대신 별도의 원가동인으로서 ①공통면적비율(a)[(기본시설면적+부속시설면적)/총면적]을 선적용하고,
②산출금액에 대학 전체 수준의 연구수익비율을 적용하여 공통지원금액 산정
 - ※ 청소용역비와 보안용역비는 현재 연구수익비율을 기준으로 연구지원과 교육지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집행비용이 대체로 면적에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구분하도록 함
 - ※ 청소용역비와 보안용역비는 대학회계의 계정과목 단위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원장상 적요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체 작성하고, 간접비 실사 시 검토 필요

-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 공공요금(대학집행분)
 -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 공공요금(대학집행분)은 연구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공통지원으로 분류
 - (연구지원) 상기 비용은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연구지원 해당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지원은 인정하지 않음
 - (공통지원) 기존의 단순 연구수익비율 대신 별도의 원가동인으로서 ①공통면적비율(b) [(연구시설면적+기본시설면적+부속시설면적)/총면적] 선적용하고, ②산출금액에 대학 전체 수준의 연구수익비율을 적용하여 공통지원금액 산정
 - * 사립대학은 건축물관리비가 계정과목으로 구분되나, 국립대학은 건축물관리비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국립대학에서는 원장상 적요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체 작성하고, 간접비 실사 시 검토 필요

참고 1. 대학정보공시상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① 공시지침

- (공시기관) 대학
- (공시시기) 2020년 10월
- (공시내용) 2020년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0. 4. 1., 단, 사이버대학은 2020. 3. 1. 기준)

기준연도	기준면적(m ²)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m ²)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 외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설(C)	지원시설(D)	연구시설(E)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C+D+E)/A×100	재학생기준(C+D+E)/B×100

②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2020년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_대학 및 대학원용)

□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인정 범위 조정

- ◆ 국가R&D실적 기준(연간 5건/3억원)만 달성하면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행정실 인건비 전체를 공동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함에 따라 인건비가 과다하게 간접비로 반영되는 경우도 발생
 - 예를 들어 OO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국가R&D실적은 3.5억원(7건)인데 간접비 산출에 반영되는 공동지원부문 인건비는 13억원이었음
- ◆ 대학 연구현장의 부서별 연구지원 현실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인정기준을 재조정함
 - 대부분의 연구지원 업무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되는 대학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인정

○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1인 인건비 전체를 공동지원으로 인정

-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이 연구지원 활동으로 업무분장되어 있는 경우 1인 인건비에 대해 연구수익비율만큼 간접비로 인정

□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 ◆ 대학 연구현장의 부서별 연구지원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건비의 인정기준을 재조정함
 -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의 경우 대학 연구지원체계에서 포괄적인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건비는 공동지원부문 인정부서에 추가하여 연구수익 비율만큼 간접비로 인정

- ※ 현재는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만 인정

참고 2. 간접비 제도 개선사항 요약표

□ 현행 산출기준

$$\cdot \text{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등록금회계 수익(교육수익) + 연구수익}}$$

인정 간접비 (개선)	연구지원 관리비 (100%인정)	공통지원 관리비 (등록금, 비등록금 중 선택)	×	연구수익비율(*)
-------------------	-------------------------	------------------------------	---	-----------

□ 개선된 산출기준(안)

① 대학 전체 수준의 수익과 원가를 간접비 산출에 반영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범위 확대 및 연구수익비율 개선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비등록금 회계 등의 원가 추가 인정(전체 원가 반영)

$$\cdot \text{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등록금회계 수익} + \text{비등록금 회계 등 수익} + \text{산학협력단 기타수익} + \text{연구수익} \\ (\text{교육활동수익}) \quad (\text{수입대체경비/전입금})$$

②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개선사항

인정 간접비 (개선)	연구지원 관리비 (100%인정)	공통 관리운영비 (등록금, 비등록금 전체)	×	연구수익비율을 적용하되,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해서 원가동인(면적기준)을 추가 적용
-------------------	-------------------------	----------------------------	---	---

◆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i) 공공요금
(산학협력단 집행분)

· 연구지원 : 현행 기준만 인정
(계량기 적용)
· 공통지원 : 공통면적비율(a) x 연구수익비율
(기본면적+부속면적/총면적)

<p>[신설] ② 청소용역비, 보안용역비</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 연구면적비율 (연구면적/총면적) ※ 산단집행/대학집행 모두 인정 · 공통지원 : 공통면적비율(a) x 연구수익비율 (기본면적+부속면적/총면적)
------------------------------------	---	--

<p>[신설] ③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 공공요금(대학집행분)</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원 : 공통면적비율(b) x 연구수익비율 (연구면적+기본면적+부속면적/총면적)
--	---	--

◆ 시설 관련 비용 이외의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p>공통 관리운영비</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원 : 연구수익비율
-----------------	---	---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개선사항

<p>[개선]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1명 인건비를 공통지원으로 인정 ※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로 인해 단과대학 역할은 미미함
---	---

④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건비 개선사항

<p>[신설] 일반대학원 연구정책지원부문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추가
--	---

2. 시뮬레이션 결과

□ ○○대학교 및 ○○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 ○○대의 2020회계연도 간접비 실사비율 산출자료에 상기 개선사항 일부를 적용한 결과 기존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5.18%p 감소(24.28% → 19.10%)

- 대학 전체의 수익과 원가를 반영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제도 개선사항	○○대 비율 변동효과
① 대학 전체의 수익과 원가 반영	△ 2.72 %p
- 연구수익비율 산정시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수익 반영 (연구수익비율 기존 56.66% → 39.00%)	△ 3.42 %p
- 공통지원 관리운영비에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원가 추가	+ 0.70 %p
②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원가동인 변경 (①에 추가)	△ 0.43 %p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명만 50% 적용 (①에 추가)	△ 2.01 %p
(종합) ①+②+③의 효과를 동시 적용	△ 5.18 %p

※ 시뮬레이션 세부내용은 “참고2. ○○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

○ ○○대학교의 2020회계연도 간접비 실사비율 산출자료에 상기 개선사항 일부를 적용한 결과 기존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7.53%p 감소(27.81% → 20.28%)

제도 개선사항	○○대 비율 변동효과
① 대학 전체의 수익과 원가 반영	△ 3.43 %p
-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비등록금 회계 수익 반영 (연구수익비율 기존 82.89% → 53.02%)	△ 6.58 %p
- 공통지원 관리운영비에 비등록금 회계 원가 추가	+ 3.15 %p
② 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원가동인 변경 (①에 추가)	△ 2.21 %p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명만 50% 적용 (①에 추가)	△ 1.89 %p
(종합) ①+②+③의 효과를 동시 적용	△ 7.53 %p

※ 사전분석 세부내용은 “참고3. ○○○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하되, 상기 비율 증감 효과분석 방식은 ○○대 방식을 적용함

□ 연구비 상위 27개 대학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대상기관 : 2020회계연도 연구비 규모(*1)가 500억 원 이상인 27개 대학

(*1) 2020회계연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분모로 적용된 연간 연구비(직접비) 기준

○ 분석방법 : 개선방안을 적용한 검토 수행(일부 대체적인 방법 적용)

① 대학 전체의 수익과 원가 반영

- 연구수익비율 산정시 분모에 그동안 미반영하던 (국립) 수입대체경비 및 전입금 수익 또는 (사립) 비등록금 회계 수익을 추가 반영
 - * 다만, 교내·외장학금과 입시관리비 관련 수익은 간접비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업목적에 위해 직접 사용되므로 해당 사업비를 수익에서 차감
- 공통지원 관리운영비에 (국립) 수입대체경비와 학사활동사업비 또는 (사립) 비등록금 회계 원가 추가
 - * 국립대학은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수입대체경비와 학사활동사업비를 반영하고, 국가지원금만 미반영

②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해 원가동인 변경

- 시설 관련 비용(시설 관련 관리운영비 및 시설팀 인건비)에 대해 연구수익비율 대신 면적 비율을 적용
 - * 청소,보안구역비는 연구면적비율만큼 연구지원 관리운영비로 적용하고, 공통면적비율①만큼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적용
(다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국립대학은 용역비, 사립대학은 시설용역비 금액을 청소,보안구역비로 대체 적용)
 - *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 및 공공요금(대학집행분)은 공통면적비율②만큼 공통지원 인건비와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반영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명만 공통지원으로 인정

- 공통지원 인건비로 반영되었던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 중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1명의 인건비를 공통지원 인건비로 반영
(다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단과대학 인력 중 가장 인건비가 높은 1인을 적용)

〈표 4-2〉 연구비 상위 27개 대학의 개선영향 추정 분석

번호	대학명	구분	FY2020 실사비율 (a)	① 대학 전체의 수익원 가 반영		② 시설 관련 비용 원가동인변경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1명 적용		(종합) ①+②+③의 효과를 동시 적용	
				조정시 실사 비율 (b)	증감된 실사비율 (b-a)	조정시 실사 비율 (c)	증감된 실사 비율 (추가) (c-b)	조정시 실사 비율 (d)	증감된 실사 비율 (추가) (c-b)	조정시 실사 비율 (d)	증감된 실사 비율 (전체) (d-a)
1	○○대학교	사립	29.5%	29.7%	0.2%	30.5%	0.7%	29.5%	-1.0%	29.5%	0.0%
2	○○대학교	사립	27.5%	27.1%	-0.4%	25.9%	-1.2%	25.3%	-0.6%	25.3%	-2.2%
3	○○대학교	국립	27.8%	26.0%	-1.8%	24.7%	-1.3%	23.9%	-0.7%	23.9%	-3.8%
4	○○대학교	사립	28.6%	28.1%	-0.6%	24.3%	-3.7%	23.5%	-0.8%	23.5%	-5.1%
5	○○대학교	국립	29.3%	25.0%	-4.3%	24.3%	-0.7%	21.8%	-2.5%	21.8%	-7.5%
6	○○대학교	국립	23.3%	22.8%	-0.5%	22.1%	-0.7%	21.5%	-0.6%	21.5%	-1.8%
7	○○대학교	사립	23.7%	23.4%	-0.3%	21.8%	-1.7%	20.0%	-1.8%	20.0%	-3.7%
8	○○대학교	사립	25.2%	26.4%	1.3%	24.0%	-2.5%	21.9%	-2.1%	21.9%	-3.3%
9	○○대학교	사립	27.8%	28.5%	0.6%	27.4%	-1.1%	25.5%	-1.9%	25.5%	-2.4%
10	○○대학교	사립	27.4%	28.4%	1.1%	26.4%	-2.0%	24.7%	-1.7%	24.7%	-2.7%
11	○○대학교	국립	24.1%	22.1%	-2.0%	20.9%	-1.2%	19.4%	-1.5%	19.4%	-4.7%
12	○○대학교	국립	20.9%	21.3%	0.4%	20.1%	-1.2%	18.6%	-1.5%	18.6%	-2.3%
13	○○대학교	사립	30.4%	36.3%	5.9%	33.3%	-3.0%	29.9%	-3.4%	29.9%	-0.5%
14	○○대학교	사립	27.4%	25.0%	-2.5%	26.0%	1.0%	25.2%	-0.8%	25.2%	-2.3%
15	○○대학교	사립	25.9%	26.9%	1.0%	25.2%	-1.7%	24.9%	-0.3%	24.9%	-1.0%
16	○○대학교	사립	28.4%	26.1%	-2.3%	24.9%	-1.2%	22.9%	-2.0%	22.9%	-5.5%
17	○○대학교	사립	27.2%	27.1%	-0.2%	25.2%	-1.9%	23.0%	-2.3%	23.0%	-4.3%
18	○○대학교	사립	25.9%	24.6%	-1.4%	23.0%	-1.6%	22.2%	-0.8%	22.2%	-3.7%
19	○○대학교	사립	27.7%	28.5%	0.9%	25.7%	-2.8%	23.7%	-2.1%	23.7%	-4.0%
20	○○대학교	사립	28.1%	29.3%	1.2%	28.9%	-0.5%	26.7%	-2.2%	26.7%	-1.4%
21	○○대학교	국립	25.0%	24.8%	-0.2%	23.9%	-1.0%	21.2%	-2.7%	21.2%	-3.9%
22	○○대학교	국립	26.1%	25.9%	-0.2%	25.2%	-0.7%	24.2%	-1.0%	24.2%	-1.9%
23	○○대학교	사립	26.3%	27.3%	1.0%	24.6%	-2.6%	23.2%	-1.4%	23.2%	-3.1%
24	○○대학교	국립	20.2%	21.4%	1.2%	19.5%	-2.0%	18.0%	-1.4%	18.0%	-2.2%
25	○○대학교	국립	24.3%	21.5%	-2.7%	20.5%	-1.0%	18.5%	-2.1%	18.5%	-5.8%
26	○○대학교	사립	27.8%	24.2%	-3.6%	22.0%	-2.2%	21.4%	-0.6%	21.4%	-6.5%
27	○○대학교	사립	26.8%	27.6%	0.8%	25.0%	-2.6%	22.8%	-2.2%	22.8%	-4.0%
평균			26.4%	26.1%	-0.3%	24.6%	-1.5%	23.1%	-1.6%	23.1%	-3.3%

* ○○대, ○○대는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추가반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4절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간접비 제도 개선(안)의 적용시기

- 원가동인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각 대학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22년에 개선된 제도는 2025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
 -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원가동인 개선안 및 ABC 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2025년부터 원가동인 개선안과 간접비 ABC 제도를 병행 추진하여 간접비 산출제도의 Dual System 확립
 - 과기중심대학과 국가R&D 2,000억원(*) 이상 수주대학: ABC 적용 유도
 - 일반 대학 : 원가동인 개선방안 적용
 - 소규모 대학 : 간이법 적용 검토
- * ABC 적용 대학 규모는 예시적 금액임

구분	2022년	2023~2024년	2025년
원가동인 등 제도 개선	• 원가동인 등 개선방안 확정	• 각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	• 원가동인 등 개선방안 적용 (2023~2024년 결산)
간접비 ABC 제도	• 간접비 ABC 제도 마련	• 간접비 ABC 참여 대학 확대(*) 및 사전 준비기간	• 간접비 ABC 제도 시행 (2023~2024년 결산)

* 4대 과기원 이외의 국립대학 및 주요 대학에 대해서도 간접비 ABC 제도 확대
[그림 4-5] 대학 간접비 산출제도 향후 일정

□ 간접비 제도 개선 향후 일정

- 2023년 01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 2023년 02월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정안 확정
- 2023년 03월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명회 개최
- 2023년~2024년 각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
- 2025년 원가동인 반영 등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 시행
 - 2023~2024년 결산에 대하여 2025년 간접비 비율 산출

□ ABC 원가계산 제도 개선 일정

- 영국 및 DGIST ABC 제도 사례 분석
 - 2020년도 영국의 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ABC) 도입방안 용역
 - 2021년도 DGIST 활동기준원가계산(ABC) 시행
 - 영국의 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ABC) TRAC Guideline과 Template 입수하여 분석
 - 영국 출장을 통한 영국 혁신기관, 대학 관계자 면담 및 사례 조사
 - * 일정 : 2022. 10. 19.~10. 29.
 - * 방문기관 :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영국혁신기구(UKR), 브리스톨대학, 옥스포드대학, 더블린대학 등
- 과학기술중심대학 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 대학에서 ABC 도입 작업은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에서 수행
 - KAIST, GIST, UNIST 수행 회계법인 선정
 - DGIST 2021년 ABC 계산 수행, 2022년 ERP 구축 설계(ABC원가분석 모듈 포함)에 대한 전문가 미팅 진행
 - 컨설팅 진행과정 공유, ABC표준안 적용을 위한 이슈토론 등을 위해 4개 과기원 공동워크숍 수행
 - 2022년 11월 또는 12월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예정

○ 향후 적용 일정 (안)

- 2023년 초 ABC 도입 매뉴얼(안) 제작
- 도입방안 수립 시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사항 검토(ABC 적용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 대학의 ABC에 의한 간접비 계산 방식(안) 결정
- 주요 대학 ABC 도입 권유 및 추진 : 국립대학교 우선 추진
- 2024년도 주요 연구중심 사립대학에 ABC 도입 추진
- 대학의 ABC에 의한 간접비 제도 방식 결정 및 공고
- 2025년도 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ABC)을 도입한 대학에 ABC 간접비비율 산정

□ 기대효과

- 합리적으로 간접비 원가를 산출 및 보전함으로써 국가는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의 지속성 유지 지원
- 다양한 원가동인 적용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등 정확한 대학 간접비율 산정방식 도입을 통해 간접비율 산정의 공정성 제고
-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대학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 가능
- 대학 회계의 투명성 증가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참고 3. ○○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 간접비비율 개선 산출자료 시뮬레이션 기초자료

○ 연구수익비율 재산출

구분	연구수익(A)	교육수익(B)	계(C=A+B)	연구수익 비율(D=A/C)
현행	82,336,310,741	62,977,959,954	145,314,270,695	56.66%
개선(안)*	82,336,310,741	128,738,458,770	211,074,769,511	39.00%
증감	-	65,760,498,816	65,760,498,816	-17.66%

* 「국립대학회계 결산 작성기준」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 상의 자체수익 + 내부거래 및 기타 총액 적용 (교내장학금 차감 미적용)

현행 지침 < 교육 수익 >

(인정항목) 「국립대학회계 결산 작성기준」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상 교육활동수익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상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중에서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불인정항목)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교육활동수익이 재원인 교내장학금*,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은 교육수익 산출시 제외

* 교내장학금 산출 시 근로장학금은 차감하되, 차감할 근로장학금 금액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근로장학금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

○ 대학 정보공시 기준 교사시설면적 산출

구분	기본시설(A)	지원시설(B)	연구시설(C)	부속시설(D)	기타시설(E)	합계
면적	235,626	77,285	72,921	23,402	23,447	432,681
비율	54.46%	17.86%	16.85%	5.41%	5.42%	100%

- 연구시설면적비율: 16.85%

- 공통지원비율 ①, ② 적용: (기본시설+부속시설)/총면적 = 59.87%

- 공통지원비율 ③ 적용: (연구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총면적 = 76.72%

○ 2020년 기준 연간 연구비: 67,508,387,435원

□ 간접비비율 개선 산출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I. 개별 적용 결과

① 연구수익비율 재산출

- 재정운영표 명세표 중 자체수익+내부거래 및 기타 총액 적용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연구 수익%	간접비 실사%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① 현행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56.66%	24.28%
② 연구수익 비율 조정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39.00%	20.86%
비고 (②-①)	-	-	-	-	-17.66%	-3.42%

② 대학회계 공동관리비 인정 범위 확대

- 수입대체경비 경비 내역 추가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간접비 실사%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 수익 56.66%	연구 수익 39.00%
① 현행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24.28%	20.86%
② 관리운영비 인정 확대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7,802,335,896	25.29%	21.56%
비고 (②-①)	-	-	-	1,198,707,371	1.01%	0.70%
					-2.72%	

③ 단과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명만 50% 적용

- 학과조교 및 기타 행정실 인건비 미인정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간접비 실사%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 수익 56.66%	연구 수익 39.00%
① 현행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24.28%	20.86%
② 단대 인건비 조정	3,936,087,625	5,560,830,062	1,676,815,847	6,603,628,525	21.01%	18.85%
비고 (②-①)	502,844,656	-	-4,782,376,809	-	-3.27%	-2.01%
					-5.4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④ 시설관련 비용(공공요금, 청소·보안용역비,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에 대해서
공통지원비율 적용

－ 공통지원비율: 공공요금, 청소·보안용역비 59.87%, 시설팀 인건비, 건축물관리비 76.72%

※ 공공요금은 산단회계에서 지출에 따라 대학회계 연구지원 미인정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간접비 실시%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 수익 56.66%	연구 수익 39.00%	
① 현행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24.28%	20.86%	
② 시설관련비용	3,433,242,969	5,987,557,997	5,991,966,154	5,220,254,922	23.36%	20.43%	
X	공공요금	3,433,242,969	6,459,192,656	7,200,223,013	24.78%	21.21%	
	청소·보안용역비	3,433,242,969	6,459,192,656	5,587,332,262	24.06%	20.91%	
	시설팀인건비	3,433,242,969	5,560,830,062	5,991,966,154	6,962,084,697	24.19%	20.80%
	건축물관리비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480,207,896	24.18%	20.79%
비고 (B-A)	-	426,727,935	-467,226,502	-1,383,373,603	-0.92%	-0.43%	
					-3.85%		

II. 통합 적용 결과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간접비 실시%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 수익 56.66%	연구 수익 39.00%
① 현행	3,433,242,969	5,560,830,062	6,459,192,656	6,603,628,525	24.28%	20.86%
② 개선	관리운영비					
	단대 인건비	3,936,087,625	5,987,557,997	1,568,045,517	6,060,506,121	21.10%
시설관련비용						
비고 (B-A)	502,844,656	426,727,935	-5,249,603,311	-184,666,232	-3.18%	-1.76%
					-5.18%	

참고 4. ○○○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 FY2020 결산 기준 간접비 실사 요약

- 연구수익비율: 82.89%
- 간접비 실사비율: 27.81%

○ 2021 대학정보공시 교사시설 확보 현황 및 적용 면적비율

구분	기본시설(A)	지원시설	연구시설(B)	부속시설(C)	기타시설	전체(D)
면적(㎡)	141,203	79,031	119,972	66,788	41,508	448,502
비율(%)	31.48	17.62	26.75	14.89	9.25	100

① 연구시설 면적 비율* = 26.75%

*연구시설면적(B)/총면적(D)

② 청소,보안 용역비 관련 공통면적 비율** = 46.38%

**{기본시설(A)+부속시설(C)}/총면적(D)

③ 시설탐인건비, 건축물관리비, 대학공공요금 관련 공통면적비율 = 73.12%

***{기본시설(A)+연구시설(B)+부속시설(C)}/총면적(D)

○ 수정 연구수익비율 = 53.02% = 연구수익 / {등록금+비등록금+연구수익}

○ 항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FY2020 간접비 대비 7.53%p 감소

구분	연구지원부분(a)		공통지원부분(b)		합계 (a+b)	비고 (비율증감)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1. 2021 실사 비율	2.74	6.81	7.22	11.05	27.81	
2. 시뮬레이션 결과	2.74	6.49	2.63	8.42	20.28	-7.53
-단과대학 인건비			-3.16			-3.16
-공공요금(산단)**						-
-청소,보안용역비		-0.32		-0.77		-1.09
-시설탐인건비 등*			-0.27	-2.00		-2.27
-기타공통 인건비			-1.15			-1.15
-기타공통 관리비				0.14		0.14

(*)시설탐 인건비 등: 시설탐인건비, 건축물관리비, 대학 공공요금

(**)산단의 공공요금은 계량기 적용에 따라 모두 연구지원부분으로 인정

여 백

제 5 장

결 론



여 백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1. 추진배경

- 회계 투명성 강화 추세에 대응
 - 각 분야마다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간접비 분야도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
 - 비영리 연구기관의 회계정보 및 간접비 정보는 국가R&D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산출될 필요
 -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검증기능 및 비교가능성 강화 필요
 - 현재 국가R&D 간접비 비율은 연구기관에 특화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이하 출연(연)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자료에 기반하여만 산출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 출연(연) 이외의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비영리기관은 각 기관의 형편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수행

〈표 4-3〉 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구 분	적용 회계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2021회계연도부터 4대 과기원은 간접비 회계기준* 적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외 비영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상이함

(*) 간접비 회계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을 연구제도혁신과-1558(2020.8.27) 공문으로 배포한 바 있으며, 동 공문에 따르면 사용기준에 따른 회계원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이하, '간접비 회계기준」)으로 통보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음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출연(연) 회계기준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 산출 시 수기로 작성된 원시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하므로 간접비 비율 산출업무가 과중하고 산출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됨
 - 또한 기관마다 제출하는 간접비 검증자료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낮고 이상징후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출연(연) 회계기준 확대 및 간접비 검증자료 표준화를 통해 간접비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
- 간접비 산출소위원회에서도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요구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가 사용기준 제1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계원칙 미적용기관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행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지침에는 없음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목적으로만 변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간접비 회계기준 변환 재무제표만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
 - 식별가능한 원가와 식별불가능한 원가 구분이 없이 단순하게 재무상태표 일부 계정과목 변경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만 제거하고 계정 재분류 후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지침 부재
 - 기관 전체 사업수익 중 연구사업수익 이외의 수익이 30% 이상(임대료 수익은 전체 사업수익 중 5% 이상)인 경우 대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으로 구분 필요

- 연구사업수익 이외의 수익(예, 특성화대학 교육수익, 의학원 의료수익, 시험분석수익(기술지원사업수익), 임대료수익)이 있는 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시 기존의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으로의 배분방식에 한계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2.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방향

□ 간접비 회계제도 개선의 의의

- 간접비 회계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국가R&D 간접비 관리 및 적정 간접비 비율 산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
 - 국가R&D 간접비는 간접비 회계를 통해 관리되며, 간접비 비율도 간접비 회계제도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기초하여 산출 가능
-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외부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간접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회계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임
 - 불필요한 간접비 지원 방지 및 간접비 비율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해서는 결산자료 작성지침인 회계규정에서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등의 회계 기준’으로 통일화되어야 함
 - ※ 현 기관별 회계기준이 상이한 상황 하에서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및 사업비용의 구분(직접, 간접, 기타) 미적용으로 인해 간접비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 출연(연) 회계제도 개선방향

- ① 각 기관의 사업 구조에 따라 연구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출연(연) 회계기준을, 연구사업 이외의 기관목적사업이 전체 사업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 ※ 국가R&D를 수행하는 특정(연)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연구기관에 특화된 간접비 회계기준 혹은 출연(연)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구분	출연(연) 회계기준 [연구사업만 영위]	간접비 회계기준 [연구사업 및 기관목적사업]
공식명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대상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특정연구기관
계정구분	• 출연(연) 단일계정(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계정을 구분

② 과학기술 연구기관 재무제표 양식 수정

- 현재 단일 계정으로 되어 있는 출연(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연구사업 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양식 마련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실무적용 작성지침 필요

- 운영성과표를 연구사업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구분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참고1 참조)
 - ※ 예산 편성에 의한 구분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결산 목적으로 구분회계 적용은 지양
-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포괄하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지침 마련

④ 기관의 고유사업을 표시하는 기관목적사업수익·비용을 신설하고, 연구사업수익·비용과는 별도로 표시

- 기관목적사업수익: 기관목적출연수익과 기관사업수익으로 구분
- 기관목적사업비용: 기관목적출연비용과 기관사업비용으로 구분

출연(연) 회계기준(단일계정)

계정과목	출연(연)
〈신설〉	
연구사업수익	
연구개발출연금수익	xxx
국가R&D사업수익	xxx
수탁연구사업수익	xxx
기술지원사업수익...	xxx
〈신설〉	
연구사업비용	
연구사업직접원가	xxx
연구사업간접원가	xxx
연구사업기타원가	xxx
〈신설〉	

간접비 회계기준(복수계정)

계정과목	통합
I. 사업수익	
1. 연구사업수익	
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xxx
2) 국가R&D사업수익	xxx
3) 수탁연구사업수익	xxx
4) 기술지원사업수익...	xxx
2. 기관목적사업수익	
1) 기관목적출연수익	xxx
2) 기관사업수익	xxx
II. 사업비용	
1. 연구사업비용	
(1) 연구사업직접원가	xxx
(2) 연구사업간접원가	xxx
(3) 연구사업기타원가	xxx
2. 기관목적사업비용	
1) 기관목적출연비용	xxx
2) 기관사업비용	xxx

[그림 5-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재무제표 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안)	비 고
<p>제28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수행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8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수행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p> <p>③ <u>운영성과표의 작성은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연구사업부문과 기관목적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u></p>	<p>구분회계 표시에 대한 근거</p>
<p>제29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성과표는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리고 회계관습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 사항이 중요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9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성과표는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리고 회계관습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 사항이 중요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u>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u> 	<p>합리적 원가배분(ABC) 지침 근거 마련 필요</p>

□ 과학기술 연구기관 회계제도 개선 로드맵

- 회계제도의 개선은 전문인력 교육 및 회계시스템 반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 필요
- 향후 결산이 이루어지는 3개 회계연도 동안 단계적으로 회계제도 개선을 진행
 - (2022년) 각 기관이 현행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을 수행
 - (2023년) 각 기관이 현행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되, 신규 회계기준 및 간접비 구분지침에 따라 시범 재무제표 작성·제출
 - (2024년) 신규 회계제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기관 결산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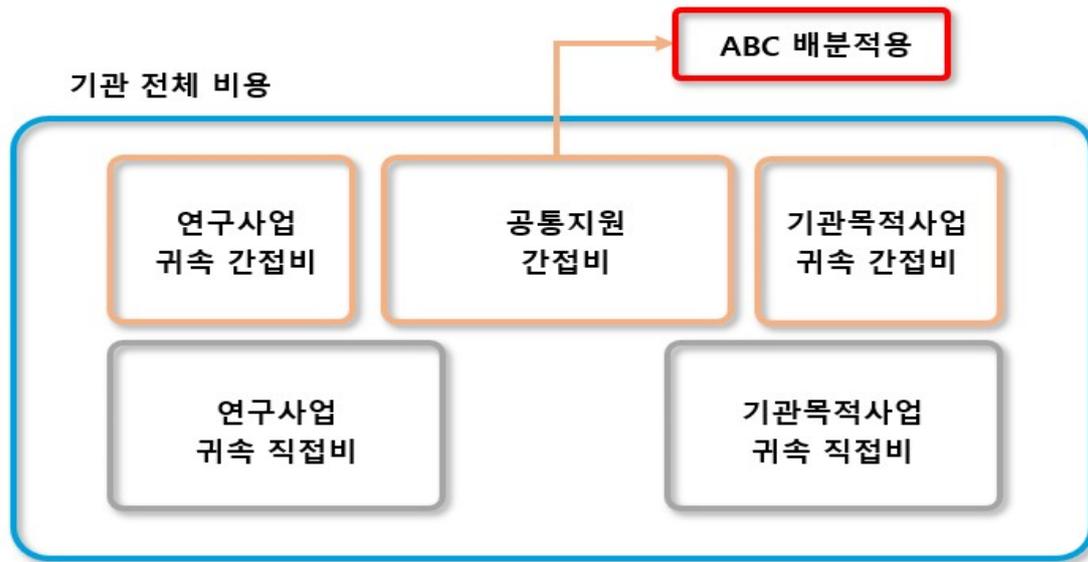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회계기준 및 간접원가 구분지침 등 제시 • 신규 회계기준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재무제표 검토
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회계제도 유지 (2022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회계제도 유지 (2023년 결산) • 시범 재무제표 제출 (2023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회계제도 시행 (2024년 결산)

[그림 5-2] 회계제도 개선 로드맵(2022~2024)

참고 1. 운영성과표 구분회계 세부지침(안) 내용

□ 운영성과표 구분회계 세부지침 개요

- 전체 운영비 중 간접비 항목에 대하여 총계정원장에서 관리되는 계정과목 단위로 ①구분회계 단위(연구개발사업/기관목적사업) 연관 여부 ②개별분석 가능 여부 ③부서별 구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접 귀속 또는 배부 귀속 방법 결정



[그림 5-3] 운영성과표 구분회계 구조도

□ 간접비 구분회계 적용기준

- 총계정원장상 간접비 계정과목을 크게 2단계로 분류하여 구분회계단위(연구개발사업/기관목적사업)로 직접 귀속 또는 배부 귀속
 - (1단계) 1개의 계정과목 전체금액을 특정 구분회계 단위에 직접 귀속
 - ※ (예) 목적성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직접 귀속
 - (2단계) 특정 구분회계 단위로 귀속할 수 없는 간접비는 공통지원 간접비로 분류하여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배분방식을 적용
- 총계정원상상 부서 단위로 발생하는 계정과목을 구분회계 단위로 배부해야 하는 경우는 부서별로 차별화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 귀속
 - ※ (예시) 공통지원부서의 인건비는 사업별 업무비중 등으로 배부

- 전사 공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구분이 불가능한 계정과목은 ①내부자료를 통해서 부서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조직별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고, ②부서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면적기준, 총수익기준 등 별도의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배부
 - ※ (예) 퇴직금은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생하지만, 발생부서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부서별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
 - ※ (예)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면적비율 등으로 배부

제2절 대학 간접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 내역서 분석 및 개선계획

1. 추진배경 및 분석대상

□ 추진 배경

- 대학이 최초 제출한 현행 대학 간접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자료를 분석하여 간접비 정책에 활용 여부 검토
 - － 현행 지출내역서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비 사용정보의 범위 확인
 - － 지출내역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확인 작업 필요
 - － 간접비 사용기준 및 간접비원가 산출기준과의 연계 여부 파악

□ 지출내역서 자료가 향후 간접비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출내역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대학의 간접비 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출내역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합 여부 검토, 간접비원가 산출기준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정보 생산 추진

□ 분석대상

- 총 약 160개 대학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2021~2022 회계연도)

※ 분석 및 검증과정에서 지출내역서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 참여기관

- KISTEP 담당자 및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2. 분석계획

□ 통계적 분석

- 전체 대학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 각 대학별 지출내역을 취합하여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율 분석
- 다양한 분류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세부내역 분석
 - 국립/사립 등 대학 유형, 연구비 규모, 학교회계전출금 규모 등 분류기준별로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타사업의 간접비수익 대비 간접비지출액, 간접비수익 대비 간접비잔액 등 상대 비율 분석

□ 특이사항 분석

- 유형별 이상항목 확인
 - 지출내역서상 간접비 잔액이 0원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
 - 특정 계정 또는 지출항목으로의 편중 현상
 - 지출금액이 억원 단위, 천만원 단위로 일정한 경우 등
- 정합성 검토 작업 수행
 - 학교회계 및 산학협력단 결산서와의 대사
 - 간접비 산출자료와의 비교 등 자료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지출내역서를 샘플 검토하여 주요 오류사항을 확인
 - 필요하면 대학 측의 협조를 얻어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을 문의

3. 개선계획

□ 제도개선을 위한 사례 파악

- 대학 방문 또는 간담회 개최
 -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학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

- 지출내역서 작성 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 지출내역서를 샘플 검토하여 주요 오류사항을 확인
 - ⇒ 지출내역서 작성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 지출내역서 세분화 추진

- 대학의 간접비 사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출내역서 계정과목을 세분화
- 세부계정과목 신설을 위해 간접비원가 산출지침, 과기부 제출자료 등을 활용

4. 기대효과

- 대학간접비 정책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간접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의 신뢰성 제고
-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지출내역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지침서 개정 반영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